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상미	830904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:	호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		종피보험자2		종피보험	자3	
	주식회사 케이ㅂ	손해보험	KB다이렉트(인터	넷)개인용			
보장성	202-81-48	3***	20185409	000	830904-****	이상미	600,950
	현대해상화재보	.험 (주)	무배당실손의료 (Hi1304	보장보험 1)			
보장성	102-81-32	2***	L01407006	5459	830904-****	이상미	210,980
	인별합계금액						811,93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상미	830904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9-91-35*	大 *****	일반	18,400
4-02-34*	봄**	일반	13,380
7-21-00*	참***	일반	14,800
8-96-00*	서*****	일반	23,1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69,68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69,68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
-2-
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상미	830904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6,343,455	0	1,005,230	0	7,348,685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59,70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3,100
신용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대중교통	522,930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982,062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125,000
신용카드	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일반	5,301,693
신용카드	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354,200
인별합	계금액			7,348,685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상미	830904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7,568,666	52,630	42,600	0	7,663,89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600
직불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13,300
직불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일반	2,722,846
직불카드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전통시장	52,630
직불카드	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일반	4,845,220
직불카드	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29,300
인별합	계금액			7,663,896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90503-99651194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4-

2018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상미	830904-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474,900	0	0	0	474,90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		01월	02월	03월	04월	공제대상금액
		05월	06월	07월	08월	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26,900	0	0	474,900
		0	0	0	0	
		0	0	448,00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8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이상미	830904-*****		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 기부유형	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208-82-06230	우리모두재가노인지 원센터(해피빈재단)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10,000	1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1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6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